【부천도시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 · 구조문 대비표】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부천도시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천도시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17호(2020.6.30.)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1호가목에 따라 公社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에서(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公社는 용역비가 법 제35조 제2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 별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야 한다. ② 公社는 세부평가기준이 정하는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公社는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公社에서 조사 · 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정상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公社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公社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公社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公社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公社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公社는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평가기준) ① 公社는 세부평가기준이 정하는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②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公社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公社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公社는 제6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세부평가기준은 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고된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세부평가기준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상위 기준(국토부 고시)의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이나 개정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公社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公社는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公社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公社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公社는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公社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公社는 1호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公社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公社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公社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 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9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公社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5일 이내[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公社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公社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公社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公社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公社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점수는 입찰 공고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에 업체 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 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 라. (3)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대하여 국토부고시 제2019-96(2019.12.24.) 부칙 제3조에 따른다.	부칙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 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 라. (3)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대하여 국토부고시 제2019-96(2019.12.24.) 부칙 제3조에 따른다. 부칙 <2025.08.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별표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설계 등 용역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 (15점)	(가) 등급	3	
		(나) 경력	4	
		(다) 실적	5 (8)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0)	상대평가
	(2)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가) 등급	4	
		(나) 경력	7	
		(다) 실적	8	
	(3)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가) 등급	4	
		(나) 경력	5	
		(다) 실적	5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용역 수행실적 (2점)	(가) 교육훈련	1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소계】		【50점】	
나. 용역수행실적	(1) 회사의 설계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6 (7)	
		(나)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6 (7)	
		(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1	
		(라) 용역수행성과	2 (0)	상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3)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1)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용역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2) 분야별책임기술인		4	
	(3) 분야별참여기술인		2	
	(4) 실무기술인		1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3	
		젊은 기술인 참여	0.1~0.2	

※ 가목 ( )안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나목 ( )안의 배점은 2021.1.1.이전 용역수행성과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 (15점)	(가) 등급	3	절대평가
		(나) 경력	4	절대평가
		(다) 실적	5 (8)	절대평가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0)	상대평가
	(2)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	(가) 등급	4	절대평가
		(나) 경력	7	절대평가
		(다) 실적	8	절대평가
	(3)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	(가) 등급	4	절대평가
		(나) 경력	5	절대평가
		(다) 실적	5	절대평가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점)	(가) 교육훈련	1 (2)	절대평가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0)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회사의 설계실적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 (7)	절대평가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0)	절대평가
		(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3)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1)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2) 분야별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3) 분야별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4)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1 ~ 0.2	

※ 가목 (1)항목 ( )안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한다.
(4)항목 ( )안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나목 ( )안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별표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다만,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만,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 기간 중 실제 참여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다만,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다만,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감소계수 | 0.99 |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이적기간 |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	(15)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3	2.25	1.5	0.75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만, 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4.0	3.6	3.2	2.8	2.4

(다) 실적 5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다만,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5.0(8.0)	4.5(7.2)	4.0(6.4)	3.5(5.6)	3.0(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1)은 예시로 활용
* 별표3「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시 업체별 등급 배분표」참조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4	3	2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만,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10년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다만,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중급이상	초급
4	3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만,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 미만
5	4.5	4	3.5	3

(다) 실적 5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다만,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	(15)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른다.
	(가)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나)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다)실적 5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8.0)	4.5(7.2)	4.0(6.4)	3.5(5.6)	3.0(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한다.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른다.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른다.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가)교육훈련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나)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사업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이상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이상
		0.5	0.4	0.3	0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가) 교육훈련	1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0)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15] 6 (7)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6.0 (7.0) / 5.4 (6.3) / 4.8 (5.6) / 4.2 (4.9) / 3.6 (4.2) ◦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유사용역 수행 실적금액	6 (7)	◦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50억 이상 / 50억 미만 ~ 40억 이상 / 40억 미만 ~ 30억 이상 / 30억 미만 6.0 (7.0) / 5.4 (6.3) / 4.8 (5.6) / 4.2 (4.9)
	(3) 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용역완료후 3년미만 / 용역완료후 3년이상 5년미만 / 용역완료후 5년이상 10년미만 / 용역완료후 10년이상 1.0 / 0.8 / 0.6 / 0 * "예"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년 전 준공된 동공사 기본계획 전차용역에 B사와 지분 60%로 공동참여한 A사가 금회 C사와 용역참여 지분 50%로 공동참여신청을 한 경우 평가는 1.0점×0.6(전차지분율)×0.5(금회참여지분율)=0.3점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15] 6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배점 / 6.0(7.0) / 5.4(6.3) / 4.8(5.6) / 4.2(4.9) / 3.6(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 40억 이상 / 40억 미만 ~ 30억 이상 / 30억 미만 ~ 20억 이상 / 20억 미만 배점 / 6.0 / 5.4 / 4.8 / 4.2 / 3.6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점수 / 1.0 / 0.8 / 0.6 /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용역수행실적	(4) 용역수행성과	2 (0)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유사용역 실적과 금액평가에 각각 1점식 배점하여 평가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公社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公社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公社는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公社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公社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 \frac{\sum_{i=1}^{n}(\text{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_i \times \text{해당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_i)}{\sum_{i=1}^{n}\text{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_i}$$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실적없음		(1.6점)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table><tr><td>경과기간</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10년 이상 2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tr><td>구분</td><td>1.5% 이상</td><td>1.5%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r><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가중치</td></tr><tr><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r><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 미만 18 이상</td><td>18 미만 16 이상</td><td>16 미만 14 이상</td><td>14 미만 12 이상</td></tr></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table><tr><td>경과기간</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10년 이상 2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tr><td>비율</td><td>1.50% 이상</td><td>1.50%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r><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가중치</td></tr><tr><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r><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 미만 18 이상</td><td>18 미만 16 이상</td><td>16 미만 14 이상</td><td>14 미만 12 이상</td></tr></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중복도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다만,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구 분	도로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도시	기타
협회기준 ('18.12)	243	289	319	302	327	436	379
만점기준	200	25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책임기술인 —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철도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

구분	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450%미만	4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철도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수자원분야,상수도분야,하수도분야,기타>

구분	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철도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수자원분야,상수도분야,하수도분야,기타>

구분	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중복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公社는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도시	기타(평균값)
협회기준 ('25.6월)	전체평균	200	223	187	268	269	263	384	256
	사책	175	193	165	244	238	224	384	232
	분책	213	231	197	281	280	273	401	268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책임기술인 —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항만분야,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450%미만	4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중복도	(4) 실무기술인	1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
점수	1.0	0.9	0.	0.7	0.6

<철도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수자원분야,상수도분야,하수도분야,기타>

구분	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중복도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350%미만	350%이상~400%미만	400%이상~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3.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별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부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복도 · 해외설계 수행실적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 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복도 · 해외설계 수행실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公社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로 법정계획[도로 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철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으로서 아래 구분에 의함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의 경우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적용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노반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철도궤도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노반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포함) 이외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소규모지하안전평가는 3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분야 제한 없음)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60% 인정
하천	○ 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항만 · 어항	○ 항만 및 어항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경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조경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산림	①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시설 · 숲길 조성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③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① ~ 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table>
<tr><th>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th><th>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th></tr>
<tr><td>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6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公社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公社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 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td>
<td>
<table>
<tr><th colspan="2">사업분야</th><th>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th></tr>
<tr><td rowspan="2">도시</td><td>도시계획</td><td>○ 도시 · 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 · 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 ·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포함),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td></tr>
<tr><td>도시개발</td><td>○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td></tr>
<tr><td rowspan="2">상하수도</td><td>상수도</td><td>○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td></tr>
<tr><td>하수도</td><td>○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td></tr>
<tr><td colspan="2" rowspan="2">교통</td><td>○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td></tr>
<tr><td>○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동일한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td></tr>
</table>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table>
<tr><th>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th><th>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th><th>비고</th></tr>
<tr><td>10억원 미만</td><td>1억원 이상</td><td rowspan="2">※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td></tr>
<tr><td>10억원 이상</td><td>1.5억원 이상</td></tr>
</table>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公社는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公社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公社에서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公社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公社는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외설계 수행실적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td></tr>
</table>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 · 과징금 · 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 · 과징금 · 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 ~ 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公社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公社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4.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에서 시행하는 (사업명)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OO-OO 건설공사 OO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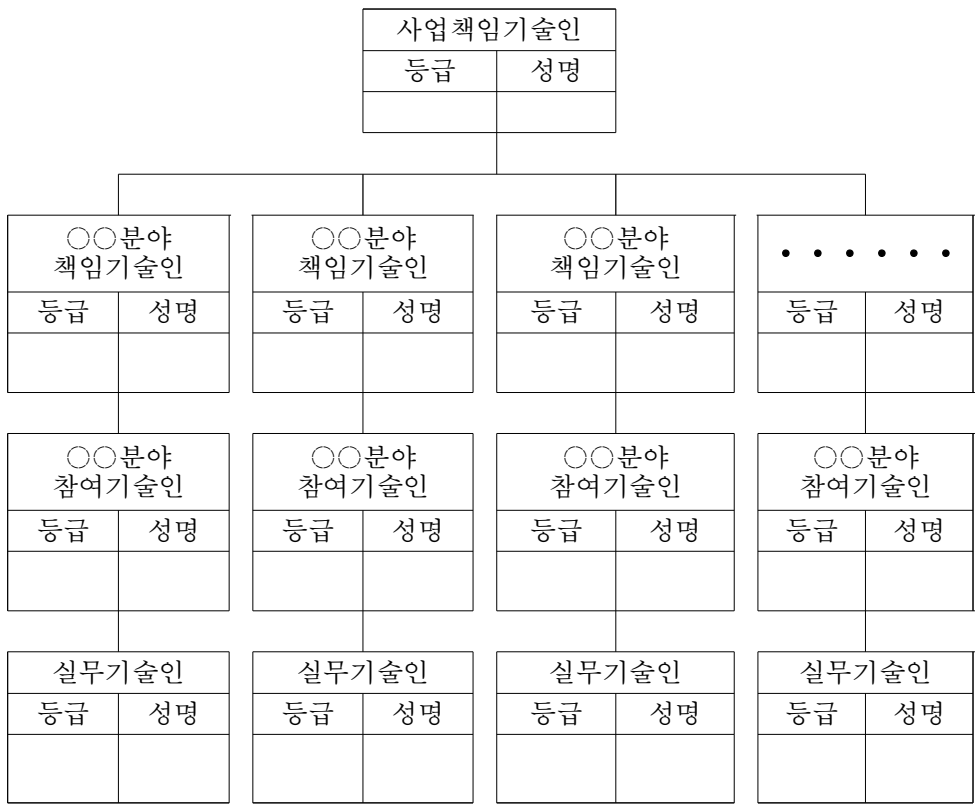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책임 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 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 조사항목 및 내용
-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사업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업부담금 내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업부담금 내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첨부 4]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대 표)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사 업 명		
발 주 청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대 표)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사 업 명		
발 주 청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처		
공 사 명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처		
공 사 명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첨부 6] 설계 등 용역 상대평가 등급배분표

상대평가 등급배분표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부천도시공사 기준 (현행)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14호, 2020. 11. 24.)	부천도시공사 기준 (개정)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천도시공사장 귀하